기업협업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8.03.01. 개정 2023.07.03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기업협업센터(이하 "센터")라 칭한다.

제2조(설립목적) 센터는 산학협력 기업의 비즈니스 요청과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, 우리대학 스쿨과 산업체와의 비즈니스 연결 포인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조직

제3조(조직) 본 센터의 각 직제는 겸직 가능하다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을 두며,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직원) ① 센터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 직원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운영위원회 설치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운영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한 7인~13인 규모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간사는 센터 직원이 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- ③ 외부위원은 산업체 전문가 중 2~3인을 외부인원으로 지정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센터의 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센터 운영규정의 개정
- ③ 기타 센터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4장 사업관리

제7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대학의 특성화와 기업의 수요에 대한 인터페이스 역할
- ② 애로상담,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에 관한 역할
- ③ 산업체와의 정기적인 교류
- ④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(삭제: 산학협력단 사업수행내역)
- ⑤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

제8조(재정) 센터의 수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, 참여기업부담금, 대학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9조(지출) 센터의 지출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,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.

제 10조(평가) 센터는 당해 연도 실적을 센터 운영위원회 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으며, 그에 대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1조(관계부서의 협조) ① 센터는 관계부서와 스쿨(학과)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업무범위가 산학협력단과 중복될 경우 센터장과 산학협력단장의 협의에 의해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상호 협조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2조(기타)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